

#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4
----------	------

제출년월일 : 2005. 3.

제 출 자 : 광 양 시



## 1.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자연재해·화재발생등 현장대응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새로이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분장하기 위함
- 아울러 보건소의 1개과를 2개과로 분리 신설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의 정비 및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주민자치과 폐지와 여유기구로 자치지원과 설치 및 업무분장(안 제4조, 제4조의2)
- 향만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업무분장(안 제5조)
- 부서간 일부 사무를 조정
  - 체육업무(문화홍보담당관실)→총무과, 혁신분권업무(기획감사담당관실)→자치지원과, 민방위업무(주민자치과)·방재·하천업무(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
- 보건소의 사무과를 폐지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분리신설(안 제7조의 2)
- 기타 농업기술센터 관련조문중 일부자구 수정 및 환경사업소 소재지 변경(안 제9조, 별표3)

## 3. 개 정 조 례 안 : 별첨

## 4. 사 전 예 고

- 예고기간 : '05. 3. 2 ~ 3. 12(12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접수 : 특이사항 없음

## 5. 주무부서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조직·인력 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를 설치하고,
- 효율적 조직·인력운용을 위하여 직제등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참고사항(관련공문 사본)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자치행정과-11765, '04.12.21)
-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자치행정과-11973, 04.12.27)

##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7호 내지 제13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 제14호 내지 제37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31호로, 제38호를 제40호로 하고, 동항에 제32호 내지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지역정보화 촉진 시책업무 추진
33. 공무원·시민 정보화 교육
34. 행정 정보화 업무
35. 전산실 및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36. 종합 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37. 정보통신공사 사용권 검사업무
38. 체육진흥 및 지원업무
39.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지원과를 총무국에 둔다.

1. 지방행정 역점시책 및 행정구역 조정
2. 지방행정 동향 및 주민 여론조사
3. 선거 및 국민투표
4. 시민운동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관리
6.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지원
7.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지원
8. 지방 분권 업무
9. 지역 혁신시책 추진

제5조제1항중 “허가과를”을 “허가과, 재난안전관리과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호를 삭제하며, 제13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28호로 하고, 동항에 제29호 내지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재난안전예방 관리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총괄
30.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재해 종합분석 안전대책 수립

- 31.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 32. 재난재해 응급복구 및 복구대책 수립
- 33.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34. 하천유지 및 관리에 관한사항
- 35. 민방위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 36.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교육 훈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9조제1항중 “농민 교육훈련”을 “농업인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9호중 “농민 후계자”를 “후계 농업인”으로 하고, 동조 제14호중 “농민교육 및 지도”를 “농업인 교육 및 지도”로 한다.

[별표3] 사업소의 명칭·위치 중 광양시 환경사업소 위치란을 “광양시 중동 308-133번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체육진흥협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홍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주민자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b>		<b>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b>		
<p>제4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p> <p>②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6의 2(생략)</p> <p>7. 선거 및 국민투표</p> <p>8. 시 행정구역 조정</p> <p>9. 시민운동에 관한사항</p> <p>10.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관리</p> <p>11.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p> <p>12. 민방위 계획수립</p> <p>13.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 교육훈련</p> <p>13의 2 국가 기반체계 보호</p> <p>14. ~ 37.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38. (생략)</p>		<p>제4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 (삭제)</p> <p>.....</p> <p>.....</p> <p>② .....</p> <p>1 - 6의 2(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7. ~ 31. (현행 제14호 내지 제37호와 같음)</p> <p>32. 지역정리화 촉진 시책업무</p> <p>33. 공무원·시민 정보화 교육</p> <p>34. 행정 정보화 업무</p> <p>35. 전산실 및 전산시스템 운영관리</p> <p>36. 종합 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p> <p>37. 정보통신 공사 사용자 검사업무</p> <p>38. 체육진흥 및 지원업무</p> <p>39.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p> <p>40. (현행 제38호와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5조(함만도시국에 두는 과) ①함만도시국에 상공과 건설과 도시과, 향만물류과, 교통행정과, 허가과를 둔다.</p> <p>② 함만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11. (생략)</p> <p>12. 재난 방재업무</p> <p>13 - 29(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조의2(여유기구)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지원과를 총무국에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행정 역점시책 및 행정구역 조정</li> <li>2. 지방행정 동향 및 주민 여론조사</li> <li>3. 선거 및 국민투표</li> <li>4. 시민운동에 관한사항</li> <li>5.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관리</li> <li>6.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지원</li> <li>7.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지원</li> <li>8. 지방분권 업무</li> <li>9. 지역혁신 시책추진</li> </ol> <p>제5조(함만도시국에 두는 과) ① .....</p> <p>..... 허가과, 재난안전 관리과를 .....</p> <p>② .....</p> <p>1 - 1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2 - 28(현행 제13호 내지 제29호와 같음)</p> <p>29. 재난안전 예방관리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평가 총괄</p> <p>30.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종합분석 안전대책 수립</p> <p>31.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p> <p>32. 재난재해 응급복구 및 복구대책 수립</p> <p>33.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p> <p>34. 하천유지 및 관리에 관한사항</p> <p>35. 민방위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p> <p>36.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 교육훈련</p>			

## 신 · 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신설〉</p> <p><b>제9조(설치)</b> ①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농업 특화사업등을 권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b>제11조(소관사무)</b>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8. (생략)</p> <p>9. <u>농민후계자</u> 및 전업농 육성지도</p> <p>10-13. (생략)</p> <p>14. <u>농민교육</u> 및 지도</p> <p>(별표3)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2조제2항관련)</p>		<p>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p> <p><b>제9조(설치)</b> ①..... <u>농업인 교육훈련</u> .....</p> <p><b>제11조(소관사무)</b> .....</p> <p>1-8. (현행과 같음)</p> <p>9. <u>후계농업인</u> .....</p> <p>10-13. (현행과 같음)</p> <p>14. <u>농업인 교육</u> 및 지도</p> <p>(별표3) .....</p>		<p style="text-align: center;"><b>명 칭</b></p> <p style="text-align: center;"><b>위 치</b></p> <p>광양시 환경사업소      <u>광양시 태인동 1658-1번지</u></p>		<p style="text-align: center;"><b>명 칭</b></p> <p style="text-align: center;"><b>위 치</b></p> <p>.....      <u>광양시 중동 308-133번지</u></p>					